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성장촉진지역을 아래와 같이 재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시·도	성장촉진지역 시·군
강원(8)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6)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6)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9)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14)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15)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11)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대구(1)	군위군
합계	70개 시·군